

1. 개정이유

우리나라 공역에서 운항하는 항공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동 종속감시시설(ADS-B) 송신기를 항공기에 장착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신규노선 개설에 따른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강화하며 안전투자에 항공기 신규 도입 항목을 신설하는 등 항공안전투자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외국항공사의 운항 편의 증대를 위해 긴급한 운항이 필요한 외국항공기에 대한 국내허가 및 사용허가 절차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항공기의 운항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해야 하는 무선설비에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송신기를 추가(안 제107조)
- 나. 항공운송사업자의 노선 추가로 안전운항체계가 변경될 경우 운행개시예정일 30일(현행 5일) 전까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신청하도록 변경(안 제262조)
- 다. 외국항공기가 긴급한 사유로 항행허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6시간 전(현행 2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안 제274조부터 제277조까지)
- 라. 항공안전투자의 범위에 ‘항공기 신규도입’ 항목을 신설하고 인건비의 범위를 항공정비사에서 주요 안전인력까지 확대(안 제317조의2)
- 마. 항공기사용사업자의 정비규정에 부품임차, 공동사용, 교환, 유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안 별표 37 제13호다목)

바. 외국항공기의 운항안전성 검사에 필요한 제출서류 및 처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운항안전성 검사 신청서 서식을 신설(안 별지 제106호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107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송신기 1대[「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국내항공운송에 사용되는 헬리콥터는 제외한다)와 같은 조 제38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

제262조제2항제3호 중 “5일”을 “30일”로 한다.

제27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하고,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과항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영공통과 허가신청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항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간 6시간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74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긴급환자 이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과항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영공통과 허가신청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274조”를 “제274조제1항”으로, “항행허가 또는 영공통과 허가”를 “항행허가”로,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영공통과허가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을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간 6시간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75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긴급환자 이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제274조제2항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영공통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영공통과허가 변경신청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76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운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간 6시간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76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긴급환자 이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277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간 6시간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277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긴급환자 이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317조의2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항공기의 신규 도입

3. 다음 각 호에 따른 항공종사자·직원의 고용 및 교육훈련

가.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

나. 항공정비 및 정비품질 담당 종사자·직원

다. 항공기 운항통제 업무 담당 종사자·직원

라. 항공교통관제 업무 담당 종사자·직원

제317조의4제3항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별표 37 제1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비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제266조제2항제2호 관련)

내용	항공 운송사업	항공기 사용사업	변경인가 대상
13. 자재 관리 다. 부품 임차, 공동사용, 교환, 유용에 관한 사항(<u>항공기사용사업자의 경우 산불진화 또는 송전탑 건설 등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만 포함</u>)	O	<u>O</u>	O

별지 제9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항공기의 자동종속감시시설 송신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던 항공기에 대해서는 이 규칙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제10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종속감시시설(ADS-B) 송신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 기간 (하단참조)
신청인	업체명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운항증명번호			
변경사유	선택	변경사항	변경예정일 (해당되는 난에만 기재)
	☐	새로운 형식의 항공기 도입	
	☐	운항증명의 효력 정지 후 운항 재개	
	☐	노선 추가 개설	
	☐	항공운송사업 양도·양수	
	☐	사업 합병	
운항관련	투입기종		
	개시에정일		

「항공안전법」 제9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2조제1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 귀하

첨부서류	1.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6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운항체계 변경에 대한 입증자료 2. 별지 제93호서식의 운영기준 변경신청서(운영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처리기간	새로운 형식 항공기 도입: 15일 운항증명 효력정지 후 운항 재개,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45일 노선 추가 개설: 30일	

외국항공기 유상운송 운항안전성 검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국내사무소 또는 대리인 *있는 경우 기재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항공안전법」 제10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3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유상운송에 대한 운항안전성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운항내용 가. 항공기의 국적·등록부호·형식 및 식별부호 나. 기항지를 포함한 항행의 경로·일시 및 유상운송 구간 다. 해당 운송을 하려는 취지 라. 기장·승무원의 성명과 자격 마. 여객의 성명 및 국적 또는 화물의 품명 및 수량 바. 운임 또는 요금의 종류 및 액수 2.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 따라 해당 정부가 발행한 운항증명(Air Operator Certificate) 및 운영기준(Operations Specifications) 3.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6에 따라 해당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운항규정(Operations Manual) 및 정비규정(Maintenance Control Manual)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수수료(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 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유의사항

외국의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사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운송 예정일 10일 전까지(국내 및 국외의 재난으로 인한 물자·인력의 수송, 국가행사 지원, 긴급수출품의 운송 등의 경우에는 운송개시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사 실시	→	결재·알림	→	신청인에게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처리기관 (국토교통부)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7조(무선설비) ① 법 제51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운용해야 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 외의 항공기가 계기비행방식 외의 방식(이하 “시계비행방식”이라 한다)에 의한 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무선설비를 설치·운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 8. (생략) <u><신설></u>	제107조(무선설비) ① ----- ----- -----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u>자동종속감시시설(ADS-B) 송신기 1대[「항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국내 항공운송에 사용되는 헬리콥터는 제외한다)와 같은 조 제38호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만 해당한다]</u>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2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운항체계 변경 사유에 따라 해당 호	제262조(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에서 정하는 날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항공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2. (생략)

3. 법 제90조제5항제3호에 따른 사유: 운항개시예정일 5일

③ ~ ⑤ (생략)

제274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청) 법 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행을 하려는 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0호서식의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과항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영공통과 허가신청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3. -----
----- 30일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74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신청) ① -----

-----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항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간 6시간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긴급환자 이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른 통과항행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영공통과 허

제275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변경신청) 제274조에 따라 외국 항공기 항행허가 또는 영공통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2호서식의 외국항공기 항행허가 변경신청서 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영공통과허가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또는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가신청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5조(외국항공기의 항행허가 변경신청) ① 제274조제1항에 따라 외국항공기 항행허가를 받은 자가-----

-----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간 6시간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긴급환자 이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② 제274조제2항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영공통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

제276조(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 허가 신청) 법 제101조 단서에 따라 외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는 그 운항 개시 예정일 2일 전까지 별지 제104호서식의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77조(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 허가 변경신청) 제276조에 따라 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
서식의 영공통과허가 변경신청
서를 항공교통본부장에게 제출
해야 한다.

제276조(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
허가 신청) -----

.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사유로 긴급하게 운항을 하
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
정 시간 6시간 전까지 신청서
를 제출할 수 있다.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긴급환자 이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277조(외국항공기의 국내사용
허가 변경신청) -----

변경되는 날 2일 전까지 별지 제105호서식의 외국항공기 국내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지방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317조의2(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① 법 제133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투자(이하 “안전투자”라 한다)의 범위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항공기 및 부품

가. 경년항공기의 교체

나. 예비용 항공기의 구입 또는 임차

다. ~ 마. (생략)

2. (생략)

3. 항공종사자·직원의 교육훈련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긴급하게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운항 예정 시간 6시간 전까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기상악화

2.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로서 예견하지 못한 정비

3. 천재지변

4. 긴급환자 이송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

제317조의2(안전투자의 범위 및 항목) ① -----

-----.

1. -----

가. 항공기의 신규 도입

나. <삭 제>

다. ~ 마.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다음 각 호에 따른 항공종사

<u>련</u> 4. ~ 6. (생 략) ② (생 략) 제317조의4(안전투자의 공시 절차) ①·② (생 략)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안전투자 공시내역서를 받은 날부터 <u>1개월</u> 이내에 확인의견을 항공교통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u>자·직원의 고용 및 교육훈련</u> <u>가.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u> <u>나. 항공정비 및 정비품질 담당 종사자·직원</u> <u>다. 항공기 운항통제 업무 담당 종사자·직원</u> <u>라. 항공교통관제 업무 담당 종사자·직원</u> 4.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17조의4(안전투자의 공시 절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u>2개월</u> ----- ----- -----. ④·⑤ (현행과 같음)
--	---